

「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5월 13일, 이은미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은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,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5. 17.)

「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1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2. 제안이유

-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,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(안 제5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,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책무)에서 군수의 책무로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
- 안 제5조(지원)에서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< 치유농업 지원사업 >

1.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,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2.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
3.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
4.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5. 종합검토의견

- 치유농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 발굴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적정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[붙임 2]

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
이 은 미 의원

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13일

발의자: 이은미 의원

찬성자: 이창열, 김광성, 남진삼 의원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,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지원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)

다. 입법예고: 2024. 4. 11. ~ 2024. 5. 1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3. 28. ~ 2024. 4. 9.(13일간), 의견 없음.

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치유농업”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(이하 “치유농업자원”이라 한다)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2. “치유농업시설”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(장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“치유농업서비스”란 심리적·사회적·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
2.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
3.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
4.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
5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)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, 농업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,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2.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
3.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
4.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1. 2.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지원)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, 농업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,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2.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
3.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
4.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주기적으로 지원하였던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(도비) 사업이 사업비 50,000천원(도비 12,000, 군비 28,000, 자부담 10,000)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용하
연락처	(033) 330 - 1304